

임직원윤리행동강령

<최종공포일 2020.9.23.>

제 6 조의2 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)

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(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)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06.14>

1. 직무관련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
2. 직무관련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(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,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 식사·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<개정 2018.06.14>
3. 직무관련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
4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<신설 2018.06.14>

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8.06.14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6.14>

[본조신설 2014.10.16][제목개정 2018.06.14]

부칙 (2013.06.28)

1. (시행일) 이 강령은 2013. 6. 28 부터 시행한다.
2. (강령의 효력) 이 강령은 사규관리규정에 정하는 회사의 기본조직,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, 기준 등을 정한 “규정”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3. (경과조치) 이 강령 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윤리경영행동규범에 따른다.
4. (다른 사규의 폐지)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윤리경영행동규범은 폐지한다.

부칙 (2013.09.06)

1. (시행일)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2. (경과조치) 이 강령의 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.
- [본부칙신설 2013.09.06]

부칙 (2014.03.13)

이 강령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4.03.13]